

제 호

비디오물배급업 신고증

1. 성명(대표자):
2. 생년월일:
3. 상호(법인명):
4. 영업소 소재지:
5. 취급 품목: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·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배급업 신고(변경신고)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[]재교부 신청 []변경신고에 따라 년 월 일 재발급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 시장·군수·
구청장

직인